

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(tbs)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관한 청원 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- 청원번호 : 제4호
- 청 원 자 :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10길 이진순 외 5명
- 소개의원 :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(더불어민주당, 관악4)
- 접수일자 : 2022년 11월 14일
-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15일

2. 청원요지

- TBS는 시민의 공공미디어 자산이며 시민참여의 통로로서 방송 플랫폼의 역할을 하였으며, 조례 제정 이후 정치적 독립성과 공공성 강화 등 TBS의 방송 설립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, 구성원과 시민들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.
- 그러나 특정 프로그램의 공공성을 이유로 TBS에 예산 삭감 등 재정적인 압박과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하여 활동 및 지원 근거를 없애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하며, 언론과 법률가들은 심의 과정에서 형식적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고, 충분한 논의도 부족하여 추가적인 논의 또한 필요함.

- 따라서 TBS의 공정성, 공공성,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고 공론의 장을 열어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조례 폐지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청원임.

3. 소개의원 청원소개 요지

- TBS는 서울시민의 귀중한 공공미디어 자산이며, 수도권 유일한 지역공영방송사로서 다양한 지역여론을 민주적으로 형성하고 지역 정보를 전달하며 이를 기반으로 사회통합과 시민참여 미디어로서 기능하고 있음.
- 정치적 독립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서울시 사업소에서 재단으로 출범하였으나 서울시는 특정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문제삼아 TBS에 재정적 압박을 가하고, 서울시의회는 폐지조례안을 발의함으로써 오히려 독립성과 공공성을 위협하고 있음.
- 또한 폐지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언론이나 법률전문가들도 법률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며, TBS의 공정성·공공성·재정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론장을 열어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임.

4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주우철)

가. 청원의 배경

- 이 청원은 유정희 의원(문화체육관광위원회)의 소개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10길 이진순 외 5명이 제출하였음.

- TBS의 설립 근거인 「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(tbs)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, 시민의 공공미디어 자산이며 시민참여의 통로로서 방송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TBS가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존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임.
- 그러나 청원의 대상인 「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(tbs)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」은 제314회 임시회 중 공청회(2022.9.26.)를 거친 후, 제315회 정례회 중 청원제출일(2022.11.14.) 다음 날 상임위원회·본회의(2022.11.15.)에서 가결되었음.
- 「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(tbs)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는 서울시의 재의요구 없이 폐지(2022.12.2.)가 확정됨에 따라 청원 대상이 부존재하게 됨.

나. 청원의 타당성 여부

- 「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」 제9조에 따르면 ▶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▶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▶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등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.
- 따라서 동 청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‘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’에 해당되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.